Q&A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에 가입된 귀하의 예금에 관한 질의 응답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보험에 가입된 귀하의 예금

목차

	질문
▼일반적인 질문	1- 9
▼기본 보험 한도	10-11
▼개인소유계좌	12-15
▼공동계좌	16-22
▼유언(Testamentary) 혹은 사망후지불(Payable-On-Death) 계좌	23-29
▼취소 가능한 생존자 신탁	30-32
▼취소 불능한 신탁	33-34
▼퇴직계좌	35-37
▼지정유언집행인, 관리인 및 대리인 계좌	38-41
▼기업계좌	42
▼합병된 기관 에 있는 예금	43

머리말

본 책자는 보험에 가입된 은행 및 저축조합의 예금주들에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예금 보험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FDIC는 미국정부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1933년에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보증하며 미국은행제도의 신용유지를 도우며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의 상황에 처할 경우 미국의 화폐공급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FDIC 보험에 가입된 예금은 미합중국의 전적인 신뢰와 신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에 관한 질문

1. 누구의 예금이 FDIC 보험에서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개인 혹은 기업체의 예금이 FDIC 보험에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주가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2. 어떤 종류의 금융 기관들이 FDIC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FDIC는 은행과 저축조합에 예치된 예금을 보증하고 있으나 모든 은행들이나 저축 조합들의 예금을 보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FDIC 보험에 가입된 금융 기관들은 각 은행 출납계원창구나 업무 데스크에 공식 FDIC 멤버 싸인을 전시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저축조합들은 공식저축조합 (독수리) 싸인을 전시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은행들은 공식 은행 (FDIC) 싸인이나 공식 저축조합 (독수리) 싸인을 전시합니다. 이 두 종류의 싸인들은 이 책자의 마지막 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연방예금보험의 적용 범위는 어떻습니까?

은행이 파산할 경우 연방예금보험은 미국 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예금을 보호합니다. 미국 내가 아닌 외국에서만 지불하게 되어 있는 예금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증권, 뮤추얼 펀드 및 이와 유사한 종류의 투자는 예금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예금주 외의)와 파산한 은행이나 저축조합의 주주들은 연방예금보험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4. 어떤 종류의 예금이 보험에 가입됩니까?

통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들어온 모든 종류의 예금은 보험에 가입됩니다. 예를 들면, 저축예금, 당좌예금, 나우(NOW)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 크리스마스 클럽계좌, 정기예금 (정기예금증서, 때로는 "CD"로 불려지는 예금) 등은 모두 보험에 가입된 예금입니다. 자기앞수표, 관리자수표(officers' checks), 비용결제수표(expense checks), 대출지급수표(loan disbursement checks), 이자지급수표(interest checks), 미결제수표(outstanding drafts), 양도성증서(negotiable instruments) 및 금융기관에서 인출된 우편환

(money orders) 등도 역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증서들은 "공공수표"라고 칭합니다. 보증수표, 신용장 및 여행자수표 등 보험에 가입된 예금 기관이 주로 책임지는 것은 현금이나 그와 동등한 것과 교환하기 위해 발행되었을 때, 혹은 예금 계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를 할 때, 역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재무성증권(Treasury securities)은 연방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보험 가입이 된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매입한 재무성증권(단기증권, 중기증권 및 장기증권)은 FDIC에 의해 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권들은 고객의 재산입니다. 보험 가입이 된 금융기관이 폐쇄되고 FDIC가 그의 접수기관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고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째는, 고객이 FDIC가 인정하는, 고객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취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인 FDIC는 고객이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나 재무성에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양도증서(a release)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접수 기관인 FDIC가 모든 재무성 증권들을 보관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폐쇄된 기관이 실행했었어야 할 방법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만일에 본인이 FDIC 보험 가입이 된 금융기관 여러 군데에 예금이 있을 때, 본인의 예금들이 보험 상의 목적으로 합쳐지게 됩니까?

아닙니다. 각자 다른 기관의 예금은 따로따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 기관이 한 군데 혹은 더 많은 곳에 지점이 있을 경우, 본점 및 모든 지점은 한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본점과 한 군데 이상의 지점에 예금이 있다면 예금 보험 혜택을 계산할 때 예금액을 모두 합쳐서 하게 됩니다. 같은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소유로 된 금융 기관들이라도 정관이 따로 되어 있으면 보험도 따로 가입이 됩니다.

7. FDIC에서는 예금의 소유권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FDIC는 보험 가입이 된 기관의 "예금 계좌 기록"을 가지고 예금의 소유권을 결정합니다. 만일 FDIC가 해당 기관의 예금 계좌 기록에 애매한 것

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금주는 법적으로 정당함이 인정됩니다. 그 외의 어떠한 기록도 법적 소유권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FDIC는 예금 계좌 기록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수탁관계(즉, 피신탁인, 대리인, 명의인, 후견인, 유언집행인, 보호인, 혹은 관리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탁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계좌상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예금 기관의 예금 계좌 기록이며, 또 한 가지 방법은 예금주에 의해서나 예금주를 위해 기록을 보관할 것을 합의한 제 삼자나 기업체에 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정상적인 업무 절차대로 보관된 기록입니다.

8. "예금 계좌 기록"이란 무엇입니까?

보험 가입이 된 예금 기관의 "예금 계좌 기록"이란 회계장부, 서명카드, 예금증서, 은행통장 및 컴퓨터기록 등입니다. 그러나 계좌명세서, 예금전표, 예금항목 및 말소수표 등은 예금보험계산을 목적으로 한 예금 계좌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9. 예금주가 사망한 후에도 예금 보험 혜택이 계속됩니까?

그렇습니다. 1998년 7월 1일을 기하여 예금주가 사망한 후 6개월 동안 FDIC는 그 예금주가 생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예금주의 계좌를 보험에 넣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 중 예금주계좌의 보험 혜택은 본 계좌가 허가된 사람들에 의해서 재조정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FDIC의 유예기간 적용은 예금보험 혜택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될 수 있을 때만 이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A와 B는 각각 생존자 취득권(survivorship)을 가진 $100,000의 보험 혜택 자격을 갖춘 공동계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B는 또한 FDIC보험 가입이 된 같은 기관에 $100,000의 개인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A가 사망하면 A의 사망 후 6개월 동안 FDIC는, 설사 B가 A의 생존자로서 이 공동계좌에서 A의 소유권 권리를 물려 받았다 할지라도, 이 A와 B의 계좌를 공동계좌로 계속 보험에 넣어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유예기간이 없다면, 이 공동계좌에서의 B의 증가된 소유권은 B의

개인계좌에 첨가되어 결국 B의 보험 한도액은 $100,000이 될 것입니다.

기본 보험 한도

10. FDIC보험 혜택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예금주의 기본 보험액은 $100,000입니다. 금융기관의 폐쇄(파산) 일자까지의 미지급이자는 보험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법적소유권이 다른 종류로서 예치된 예금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러므로 한 기관에 $100,000 이상의 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통상적인 종류의 소유권은 개인소유권, 공동소유권 및 유언(testamentary)계좌입니다. 퇴직용 자금에는 별도의 보험이 마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퇴직계좌, 키오(Keoghs) 및 연금이나 이익분배계획 등입니다. (질문 35, 36 및 37 참조).

11. 본인의 자금을 나누어 여러 계좌에 예금함으로써 FDIC보험 혜택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연방예금보험은 계좌단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소유권에 속하는 자금을 여러 계좌에 나눔으로써 FDIC보험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계좌의 종류, 즉, 당좌, 저축, 정기예금이나 자기앞수표와 같은 미결제공공수표 (질문 4 참조) 혹은 기타 형태의 예금 등은 보험 혜택 금액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나 납세자번호의 사용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소유계좌 (Single Ownership Accounts)

12. 개인소유계좌란 무엇입니까?

개인소유계좌는 한 사람이 소유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소유자 명의로 된 계좌; 대리인, 명의인, 후견인, 관리인 혹은 보호인 등이 소유주를 위해 만든 계좌; 그리고 개인소유기업에 의해 만든 계좌.

13. 개인소유계좌는 어떻게 보험에 가입됩니까?

같은 사람에 의해서 혹은 같은 사람을 위해 설립된 모든 개인소유계좌들은 서로 합쳐지게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100,000까지 보험에 가입됩니다.

14. 만일 본인의 자금을 본인의 명의로 예금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한 개인이 그의 명의로 자금을 소유 및 예금하고 그 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에 그 계좌는 공동계좌로서 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규정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유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인출은 위임장에 의해 허용됩니다. 둘째로, 만일 예금계좌 기록상에 FDIC가 만족할 수 있게, 본 예금은 한 사람에 의해 소유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의 서명자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허가되어 있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예금인출이 허용됩니다.

개인소유계좌에 대한 보험의 예

다음 예에 명시된 것은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개인소유계좌에 해당되는 예금 보험 혜택의 최고액수입니다.

예금주	예금종류	예금액
A	저축계좌	$ 25,000
A	정기예금(CD)	$100,000
A	NOW계좌	$ 25,000
A의 식당 (개인 기업)	당좌예금	$ 25,000
예금 합계		$175,000
가용보험의 최고액수		$100,000
무보험액수		$ 75,000

15. 미성년자 통일 증여법(the Uniform Gifts to Minors Act)은 무엇입니까?

미성년자 통일 증여법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취소 불능 증여(irrevocable gift)를 할 수 있게 한 주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는 자금은 미성년자를 위해 관리인의 명의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본 법령에 의해 미성년자를 위해 예치된 자금은 미성년자가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계좌에 더해져 총 합계가 최고 $100,000까지 보험에 가입됩니다.

공동계좌(Joint Accounts)

16. 공동계좌는 무엇입니까?

공동계좌는 2명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에 의해 소유되는 계좌입니다.

17. 공동계좌는 어떻게 보험에 가입됩니까?

만일 다음에 설명된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면 공동계좌는 개인소유계좌와는 별도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 모든 공동 소유자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이 뜻은 법인 즉, 주식회사 혹은 합자회사들은 공동계좌예금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 각 공동 소유자는 다른 공동 소유자들과 동등한 예금 인출 권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한 공동 소유자는 그의 서명만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나 다른 공동 소유자는 양 공동 소유자가 서명을 해야 예금 인출을 할 수 있다면 이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이 공동 소유자들은 동등한 예금 인출 권리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공동 소유자의 예금 인출 권리가 특정한 액수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 계좌의 예금은 그들의 인출권리에 따라 공동 소유자 간에 할당되어야 하며 각 할당 몫은 개인소유예금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만일 A와 B의 명의로 $100,000이 예금되어 있으나 A는 이 계좌에서 단지 $5,000까지만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면, A에게는 $5,000, 그리고 나머지는 B에게 할당이 됩니다. 이 할당된 예금은 다시 A 혹은 B의 다른 개인소유예금에 각각 더해지게 됩니다.
- 각 공동 소유자는 예금계좌 서명카드에 각자가 손수 서명을 해 두어야 합니다. 정기예금증서, 양도성증서(a negotiable instrument)에 표시된 예금채무 혹은 대리인, 명의인, 후견인, 관리인 혹은 보호인에 의해 관리되는 계좌에는 서명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금은 사실상 공동 소유여야 합니다.

18. 공동계좌의 경우 보험금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FDIC 보험 가입이 된 예금기관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계좌에서 각 개인의 소유권은 함께 합쳐져 최고 $100,000까지 보험에 가입됩니다. 공동계좌에서 각 개인의 소유권(혹은 배당된 몫)은 예금계좌 기록에 별다른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동계좌에 대한 보험의 예

4개의 한정된 공동계좌들은 다음과 같이 A, B, C 및 D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좌	소유자	잔고
#1	A 및 B	$100,000
#2	B 및 A	$ 25,000
#3	A 및 B 및 C	$ 75,000
#4	D 및 A	$ 80,000

다음 4개의 공동계좌에서 각 소유자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소유권

계좌 #1 잔고의 1/2	$50,000
계좌 #2 잔고의 1/2	$12,500
계좌 #3 잔고의 1/3	$25,000
계좌 #4 잔고의 1/2	$40,000
A의 소유권의 합계:	$127,500

공동계좌 부류에서 A의 소유권은 $100,000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7,500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B의 소유권

계좌 #1 잔고의 1/2	$50,000
계좌 #2 잔고의 1/2	$12,500
계좌 #3 잔고의 1/3	$25,000
B의 소유권의 합계:	$87,500

공동계좌 부류에서 B의 소유권은 $87,500입니다. 이 액수는 최대 $100,000보다 적으므로 충분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C의 소유권

계좌 #3 잔고의 1/3	$25,000
C의 소유권의 합계:	$25,000

공동계좌 부류에서 C의 소유권은 $25,000입니다. 이 액수는 최대 $100,000보다 적으므로 충분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D의 소유권

계좌 #4 잔고의 1/2	$40,000
D의 소유권의 합계:	$40,000

공동계좌 부류에서 D의 소유권은 $40,000입니다. 이 액수는 최대 $100,000보다 적으므로 충분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적용 범위 개요

	보험 가입이 된 예금	보험 가입이 안된 예금
A	$100,000	$27,500
B	$ 87,500	-0-
C	$ 25,000	-0-
D	$ 40,000	-0-
합계	$252,500	$27,500

19.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공동계좌의 보험 혜택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이미 명시한 것과 같이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거나 소유자의 이름을 재배열하거나 이름 스타일을 변경 또는 "그리고(and)"를 쓰는 대신 "혹은(or)"을 사용하는 것 등은 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 어떤 종류의 공동계좌가 보험 가입이 됩니까?

생존자 취득권(a right of survivorship)을 명시한 재산공동소유권(joint tenants), 부부재산소유권(tenancy by the entireties) 및 생존자 취득권이 없는 재산공동소유권(tenants in common) 등과 같이 해당 주법에 따라 소유권 취득이 된 공동계좌들은 연방예금보험에 적용됩니다.

21.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공동재산법은 예금 보험 적용 범위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주에 있어서,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는 그 배우자의 개인소유계좌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로 부부의 명의로 된, 한정된 공동계좌(a qualifying joint account)는 공동계좌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22. 공동계좌 부류에서 한 계좌가 별도 보험으로서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계좌 예금 보험 적용을 인정 받지 못한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계좌는 경우에 따라, 각 공동 소유자의 실지 소유권에 따라, 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혹은 비법인 협회와 같이 각기 명시된 소유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리하여 각 소유자의 수익권은 다른 개인소유계좌에 더해지며, 주식회사, 합자회사 혹은 비법인 협회의 경우, 이러한 기업(entity)의 다른 계좌에 더해져 총합계는 $100,000까지 보험 가입이 됩니다

유언(Testamentary) 또는 사망후 지불(Payable-On-Death) 계좌

23. 유언계좌란 무엇입니까?

유언계좌란 유언계좌의 소유자(양도인 혹은 예금주)의 사망시 예금이 지명된 수익자에게 속하게 된다는 의도가 명시된 계좌를 말합니다. 때로는 유언계좌는 잠정적 혹은 "토턴(Totten)" 신탁계좌, 취소 가능 신탁계좌 혹은 "사망후지불" 계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4. 유언계좌는 어떻게 보험에 가입됩니까?

유언계좌는 또 하나의 법적 소유권 부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혹은 소유자의 개인소유계좌나 공동계좌와는 별도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별도의 보험 적용 자격을 얻기 위해 유언계좌는 다음 요구 조건들을 전부 충족시켜야 합니다.

- 지명된 수익자는 소유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 혹은 자매여야 합니다. ("자녀"는 소유자의 친자녀, 양자녀 및 의붓자녀를 포함합니다. "손자녀"는 소유자 자녀의 친자녀, 양자녀 및 의붓자녀를 포함합니다. "부모"는 소유자의 생부모, 양부모 및 계부계모를 포함합니다. "형제"는 친형제, 이복형제, 양형제 및 의붓형제를 포함합니다. "자매"는 친자매, 이복자매, 양자매 및 의붓자매를 포함합니다.)
- 소유자의 사망시, 예금이 지명된 수익자에게 속한다는 소유자의 의사를 계좌의 권리증서에 "...을 위하여(in trust for)," "...을 위한 피신탁인으로서(as trustee for)," 혹은 "사망후지불(payable on death)"과 같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ITF," "ATF," 혹은 "POD"로 줄여 써도 좋습니다.
- 수익자는 예금보관기관의 예금계좌기록에 특별히 성명으로 틀림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각 소유자는 각 보험에 가입된 기관에서 수익자당 $100,000까지 보험 가입이 됩니다.

25. 유언(Testamentary) 계좌는 $100,000 이상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유언계좌가 공동 소유자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면 마치 각 공동 소유자가 각 수익자를 위해 별도의 유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액이 결정됩니다. 예금 계좌 기록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공동 소유자의 수익권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여러 명의 수익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수익권은 예금 계좌 기록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언계좌에 대한 보험의 예

계좌	예금액	보험액
부인을 위해 남편이	$100,000	$100,000
남편을 위해 부인이	$100,000	$100,000
첫 째 자녀, 둘 째 자녀 셋 째 자녀를 위해 부부가	$600,000	$600,000
형제 및 부모를 위해 남편이	$200,000	$200,000
합계	$1,000,000	$1,000,000

26. 부부가 자신들을 위해 ("부부가 부부를 위해") 설정한 계좌에 대한 보험 혜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오로지 그들의 급부금을 위해 설정한 계좌는 유언계좌가 아닌 공동계좌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공동 소유자금에 합쳐집니다.

27. 수익자가 소유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혹은 손자녀가 아닌 경우 유언계좌에 대한 보험 혜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만일 유언계좌의 수익자가 소유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혹은 손자녀가 아닐 경우 무자격 수익자를 위한 자금은 소유자의 개인 소유 자금으로서 보험에 가입됩니다. 예를 들면, 만일 A가 그의 친구(무자격 수익자)를 수익자로 하여 유언계좌를 설정하였을 경우, 본 계좌의 모든 자금은 A가 소유한 다른 개인 소유 자금에 합쳐집니다. 그리고 보험액은 최고 $100,000이 됩니다. 유언계좌가 다수 수익자들을 위한 다수 소유자들에 의해 보존되고, 그 중 어떤 수익자들은 별도의 보험에

적용되지만 다른 수익자들은 별도의 보험에 적용되지 않을 때는, 자금은 공동 소유자들 간에 분배되고 또 다시 각 공동 소유자에 따른 수익자들 사이에 분배되어집니다. 무자격 수익자를 위한 자금은 각 소유자의 다른 개인 소유 자금에 각각 합쳐집니다.

가령 B가 그의 딸과 조카를 위한 유언계좌를 설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금 보험 적용 범위는 먼저 딸에게 자금의 반을 할당하고 나머지 반은 조카에게 할당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딸(자격이 있는 수익자)에게 할당된 자금은 다시 B의 개인소유계좌 혹은 공동계좌와는 별도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조카(무자격 수익자)에게 할당된 자금은 B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개인 소유자금에 첨가되어 보험액수는 최고 $100,000이 됩니다.

28. 유언계좌는 서면으로 된 신탁동의서로 뒷받침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만 보험 가입이 된 보관기관이 파산할 경우, 유언계좌의 소유자는 수익자와 소유자의 관계에 대한 증명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9. 유언계좌의 공동 소유자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하면 예금 보험 적용 범위가 감소됩니까?

그렇습니다. 각 공동 소유자는 공동 소유자의 생존기간 동안만 각 수익자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사망시 보험 혜택이 감소됩니다. (아래 설명한 "유예 기간"에 따라서). 취소 가능 신탁의 양 공동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계좌의 자금은 수익자의 개인 소유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일 다수의 수익자들이 있을 때 자금은 공동 소유 자금으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1998년 7월 1일을 기하여 예금주의 사망 후 6개월 간은 마치 그 예금주가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계좌를 FDIC에서 보증하게 됩니다. 이 "유예기간" 중, 그 계좌가 인가된 사람들에 의해 재조정되지 않는 한 예금주의 계좌에 대한 보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FDIC에서는 유예 기간 적용이 예금 보험 적용 범위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증가시킬 경우에만 이를 적용합니다.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 (Revocable Living Trust)

30.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이란 무엇입니까?

신탁이란 지명된 사람을 위해 자금이 피신탁인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한 개인이 자금의 법적 소유권을 피신탁인에게 양도하는 수단입니다.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은 신탁양도인이 그 신탁을 취소하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은 서면으로 된 신탁문서를 통해 설정됩니다. (유언계좌는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의 특수한 종류이며 질문 23에서 29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31.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은 어떻게 보험 가입이 됩니까?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은 유언계좌의 별도의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특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도인의 개인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질문 32 참조). 다시 말하면 취소 가능한 생존자 신탁의 규정에 의해 예금된 자금은 양도인의 다른 개인 소유 자금에 첨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합계는 최고 $100,000까지 보험 가입이 됩니다. 만일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이 한 명 이상의 양도인들에 의해 조성되었을 경우 그 신탁 예치된 자금은 양도인들 사이에 분배되며 각 양도인의 다른 개인 소유 자금에 첨가될 수 있으며 그 합계는 각 소유자당 $100,000까지 보험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탁자금이 양도인들의 공동 소유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질문 32 참조.)

32.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 서류에 의해 예치된 자금이 양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된 자금으로부터 별도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에 의해 예치된 자금은 만일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 서류 및 예금계좌 기록이 유언계좌의 조건들에 합당하다면 양도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자금으로부터 별도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도인은 각 해당 수익자를 위해 $100,000까지 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요구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 서류에 양도인의 사망시 자금은 지명된 수익자에 속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때때로 취소 가능한 신탁 서류가 이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서류에 통

상적으로 양도인의 사망시 예치된 신탁 자금의 전액을 수익자가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명된 수익자는 양도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혹은 형제 자매여야 합니다. 부부가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 설정한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에 의해 예치한 자금은 남편 혹은 부인이 보유하는 다른 공동 소유 자금에 합쳐집니다.

●양도인의 사망시 자금은 지명된 수익자에게 속한다는 양도인의 의도가 이 계좌의 소유권 증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탁인의 명의로 자금을 예치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각 수익자는 보관기관의 예금계좌 기록에 명백히 지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와 같은 수익자들의 부류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만일에 취소 가능 생존자 신탁 서류 및 이를 뒷받침하는 예금계좌 기록이 상기 요구 조건 중 어느 것이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 가능한 생존자 신탁에 의해 예치된 자금은 양도인의 개인 소유 자금으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 양도인의 공동으로 소유된 자금으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취소 불능 신탁 (Irrevocable Trusts)

33. 취소 불능 신탁 자금은 어떻게 보험 가입이 됩니까?

취소 불능 신탁은 별도의 법적 소유권 종류입니다. 취소 불능 신탁에 의해 설정된 계좌에 있어서 각 수탁인의 수익권은 다음의 모든 요구 조건에 부합될 경우, 양도인, 피신탁인 혹은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 계좌들과는 별도로 $100,000까지 보험 가입이 됩니다.

●보관 기관의 예금계좌 기록 상에 신탁관계의 존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익자들의 수익권은 보관 기관의 예금계좌 기록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정상적인 업무 절차대로 보관된 피신탁인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수익자의 수익권 가치는 FDIC 규정에 따라 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탁은 주법에 의해 유효해야 합니다.

친척 관계는 취소 불능 신탁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같은 양도인이 조성한 한 개 이상

의 신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러한 신탁들에 의해 설정된 모든 계좌에 대한 수익자의 이권은 모두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계는 최고 $100,000까지 보험에 가입됩니다.

34. 수익자들 또는 이러한 신탁의 수익자들의 수익권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자들의 소유 수익권을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전체 신탁의 보험 적용 범위는 최고 $100,000로 제한됩니다.

퇴직계좌(Retirement Accounts)

35.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와 키오(Keoghs)에 예치된 자금은 어떻게 보험에 가입됩니까?

개인퇴직계좌(IRA)와 키오에 예치된 자금은 예금주가 동일한 기관에 예치한 다른 비퇴직 자금과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러나 IRA와 자체 관리된 키오 자금은 함께 합치게 되며 그 합계는 $100,000까지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일 예금이 통과 보험(pass-through insurance) (질문 37 참조)의 자격이 있을 경우, IRA와 자체 관리된 키오 자금은 일부 다른 퇴직자금, 즉, 다른 자체 관리된 퇴직 계획과 소위 말하는 "457 계획(457 Plan)"에 속하는 자금과 총합산이 됩니다. "457 계획"은 주, 지방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수립한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457항에 의한 거치 보상 계획(deferred compensation plans)입니다.

1993년 12월 9일 이전에 예치된 개인퇴직계좌(IRA) 및 키오정기예금은 상호간에, 그리고 예금주의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은 만기가 되거나 이월(roll over) 혹은 갱신될 때에 위에서 설명한 총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6. 로스 개인퇴직계좌(Roth IRA)와 교육 개인퇴직계좌(Education IRA)는 어떻게 보험에 가입됩니까?

새로운 로스 개인퇴직계좌는 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하여는 다른 세금 취급을 받지만, 예금 보험 목적을 위해서는 전통적 IRA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금주가 보험 가입이 된 보관기관에 로스 IRA와 전통적인 IRA 둘 다 갖고 있다면 이 두 계좌에

있는 자금은 합산되어 질문 3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교육 IRA"는 예금 보험 목적상 IRA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계좌가 필요하게 된 특성상, 교육 IRA는 예금 보험 목적으로는 취소 불능 신탁 계좌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본 책자의 질문 33에서 설명한 취소 불능 신탁 계좌(irrevocable trust account)에 따른 규정에 의해 교육 IRA를 보험에 넣습니다.

37. 연금 계획(pension plans)과 이익 분배 계획(profit-sharing plans)에 대한 예금 보험 혜택은 무엇입니까?

연금 계획과 이익 분배 계획에 속하는 예금은 "통과 보험(pass-through insurance)"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즉, 통과 보험은 전체적인 예금에 대해서 각 예금 참가자의 확인이 가능한 권리를 $100,000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금 계획이나 이익분배 계획이 통과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의 예금계좌 기록에 예금주(예, 그 계획 자체 혹은 피신탁인)가 그 자금을 수탁 자격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그 계획과 참가자의 수탁 관계의 세부 사항 및 그 계좌에서, 참가자의 수익권(beneficial interests)은 그 계획(혹은 어떤 사람 혹은 계획을 위해 기록을 보관할 것을 합의한 기업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정상적인 업무 절차대로 보관되고 있는 기록이나 기관의 예금계좌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만일 예금이 1992년 12월 19일 이전에 예치되었을 경우, 연금 혹은 이익 분배 계획에 따라 모든 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예금.
- 만일 예금이 FDIC의 "자본이 잘 된(well-capitalized)" 기관의 수준에 합당하는 기관에 예치되었을 경우 1992년 12월 19일 이후 또는 그 계획에 의해 예치된 모든 신규 예금과 이월 및 갱신 예금은 신규 예금으로 간주됩니다.
- 만일 FDIC의 "자본이 적절히 된 (adequately capitalized)" 기관의 수준에 합당하되 다음 조건들 중의 하나를 갖춘 기관에 예금

을 했을 경우, 1992년 12월 19일, 혹은 그 후에 그 계획에 의해 예치된 모든 신규 예금.

1. 기관이 FDIC로부터 "중개 예금(brokered deposits)"을 받기 위해 포기증서(waiver)를 받은 경우. 여기서 중개 예금이란 예금주가, 타인을 위해 자금 알선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중개인을 통해 예치한 예금을 말합니다.

2. 그 계획에 의한 예금을 할 때, 예금 기관이 그러한 예금이 통과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그 계획의 참여자들에게 통고한 경우.

그 밖의 모든 경우, 1992년 12월 19일 혹은 그 후에 그 계획에 따라 예치된 어떠한 예금이라도 통과 보험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전체적으로 총계 $100,000까지 보험 가입이 됩니다.

만일 예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었을 때 통과 보험을 갖고 있을 경우, 설사 기관이 통과 보험에 대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금은 통과 보험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기관이 기준 미달이 되면 같은 계좌(이미 신규된 예금이 이월 및 갱신된 것들을 포함한)에 추가로 입금된 예금은 통과 보험을 갖지 못합니다.

이 규정들은 복잡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계획의 참여자이고 귀하의 계획에 의한 예금이 어떠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알기 원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귀하의 계획 관리인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대신하여 예치된 예금

38. 지정유언집행인(executor) 혹은 관리인에 의해 예치된 자금은 어떻게 보험에 가입됩니까?

사망자의 재산 집행인 혹은 관리인에 의해 예치된 자금은 사망자의 명의로 유지된 모든 자금에 합쳐집니다. 보험의 총액은 최고 $100,000입니다.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 있든 혹은 사망자의 재산 집행인 혹은 관리인에 의해 예치되고 있든 사망자의 재산에 속하는 모든 자금은 지정유언집행인이나 관리인 혹은 그 재산의 수익자가 소유하는 자금과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39. 개인을 대신하여 후견인, 관리인 혹은 이와 유사한 수탁인이 예치한 자금은 어떻게 보험 가입이 됩니까?

후견인, 관리인 (법정의 임명 여부를 막론하고) 혹은 이와 유사한 수탁인이 예치한 자금은 수익자

의 다른 개인 소유 자금에 첨가됩니다. 그리고 총 보험액은 최고 $100,000입니다. 수탁관계는 예금 계좌 기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탁관계의 세부사항 및 그 계좌상의 당사자들의 권리는 보관 기관의 예금 계좌 기록을 통해 혹은 예금주(혹은 어떤 사람 혹은 그 예금주를 위해 기록을 보관할 것을 동의한 기업체)에 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정상적인 업무 절차대로 보관되어 있는 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0. 대리인 혹은 명의인(nominee)에 의해 설정된 계좌는 어떻게 보험에 가입되고 있습니까?

개인 혹은 기업체(소유자)를 대표하는 대리인 혹은 명의인에 의해 예치된 자금은 실소유자가 다른 개인 소유 자금이 있을 경우 거기에 합쳐지며 보험 총액은 $100,000까지 입니다. 만일 대리인(예, 부동산의 등기관리회사(title company) 혹은 변호사)이 귀하를 대신하여 자금을 예치할 경우, 귀하가 직접 귀하의 자금을 예치한 기관에 그 자금을 예치할 것인가를 귀하의 대리인에게 물어 보아야 합니다.

그 대리인의 수탁 자격은 기관의 예금 계좌 기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계좌에서 각 소유자의 성명 및 소유권은 보관 기관의 계좌 기록을 통해 혹은 대리인(혹은 어떤 사람 혹은 대리인을 위해 기록을 보관할 것을 합의한 기업체)에 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정상적인 업무 절차대로 보관된 기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 명시 규정(special disclosure rules)은 다수층의 수탁 관계에 적용됩니다.

대리인은 수 명의 소유자들의 자금을 한 계좌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명시 규정에 합당하다면 각 소유자의 자금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41. 대리인, 명의인, 후견인, 관리인 혹은 보호인이 예치한 공동 소유 자금에 대한 보험 혜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공동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대리인, 명의인, 후견인, 관리인 혹은 보호인에 의해 보관된 자금은 공동소유계좌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 및 그의 처

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 예치된 자금은 그 부부의 공동 소유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기업 계좌(Business Accounts)

42. 주식회사, 합자회사 혹은 비법인 협회(unincorporated association)가 예치한 자금에 대한 예금 보험 혜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합자회사 혹은 비법인 협회가 예치한 자금은 최고 $100,000까지 보험에 가입됩니다. 주식회사, 합자회사 혹은 비법인 협회가 예치한 자금은 주주(stock holders), 출자자(partners) 혹은 협회원(members)의 개인계좌와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기업체는 "독립된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즉, 그 기업체는 예금 보험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기업체가 소유하는 계좌이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 지정된 것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러한 계좌는 같이 합쳐지게 되며 총계 $100,000까지 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만일 한 주식회사에 별도로 설립이 되지 않은 사업부 혹은 조직 단위들이 있다면 이들 사업부 혹은 조직단위들의 예금 계좌는 예금 보험 적용 범위(deposit insurance coverage)를 결정하는데 그 주식회사의 다른 예금 계좌들과 합쳐져야 합니다.

개인 소유 기업이 소유하는 자금은 그 개인 기업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자금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주의 명의로 예치된 자금은 그 개인 기업주의 다른 개인소유계좌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계는 최고 $100,000까지 보험에 가입됩니다.

합병된 기관에 있는 예금 (Deposits In Merged Institutions)

43. 만일 두 업체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예금 보관 기관들이 한 업체로 합병되고 어떤 사람이 그 두 업체(전에는 별개였던)의 기관에 예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과적으로 보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 가입이 된 두 업체 혹은 그 이상의 예금 보관 기관이 합병될 때는 언제나 합병된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은 그 기관들의 예금은 계속해서 별도

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인수한 정기예금증서는 6개월이 지난 후 가장 빠른 만기일까지 계속해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6개월 기간 중에 만기가 되고 또한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금액(미지급 이자(accrued interest)의 포함여부를 막론하고)으로 갱신된 정기예금증서는 6개월 후 첫 만기일까지 계속해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6개월 기간 중에 만기가 되어 그 외의 조건으로 갱신되거나, 혹은 갱신되지 않고 요구불 예금(demand deposits)이 된 정기예금증서는 이 6개월이 끝날 때까지만 별도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정보

소비자 및 은행가들로 하여금 예금 보험에 관한 인식을 더 높이고 특정한 부류의 계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FDIC에서는 전자예금 보험견적체계(the Electronic Deposit Insurance Estimator (EDIE))를 개발했습니다. 이 EDIE체계는 FDIC의 인터넷 웹 싸이트(www.fdic.gov)를 통해 입수가 가능한 모든 예금 보험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도록 한 곳에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EDIE는 소비자 혹은 은행가들로 하여금 FDIC 보험 가입이 된 기관에서 한 계좌 혹은 여러 계좌에 관한 정보 입력을 허용하고 또한 자금이 충분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해 주는 대화식의 인터넷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자금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을 때, EDIE는 그 사실을 알아 내고 왜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는지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EDIE를 사용하기 위해 누구나 예금 보험 규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소유자의 성명 및 계좌의 잔고에 관해 질문을 한 후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을 계속 도와주는 것은 붉은 머리털과 녹색 눈을 한 보조자인 EDIE입니다. EDIE는 용어의 정의, 여러가지 예 및 그 체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계좌 번호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 혹은 은행이름과 같은 신분 상의 정보는 묻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본 책자는 보험 가입이 된 은행 및 저축조합에 예금주가 흔히 갖고 있는 일부 종류의 계좌들에 대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규정에 의한 보험 적용 범위의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에 기재된 정보는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제공되었으며 또한 보험 적용 범위에 관한 FDIC의 법규의 법적 해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금주 혹은 그들의 변호사들이 보험 적용 범위의 전문적인 부문에 관해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연방예금보호법 (12 U.S.D. 1811 et seq.) 및 FDIC의 보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12 C.F.R. Part 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주는 예금 계좌의 보호에 관해, 어떠한 사람의 의견 표명 혹은 해석도 연방예금보호법(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및 예금 보험 규정에 의해 제공된 보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문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애틀란타,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캔자스시, 멤피스, 뉴욕 및 샌프란시스코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를 위해 봉사하는 지역사무소의 주소를 알고자 하시면 귀하의 지방 전화번호부에서 번호를 찾거나 800-934-3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법준수 및 소비자 업무과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Division of Compliance and Consumer Affairs
550 17th Street, N.W.
Washington, DC 20429-9990

공식은행 싸인은 이렇게 보입니다.

Each depositor insured to $100,000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공식저축조합 싸인은 이렇게 보입니다.

Deposits
Federally Insured
to $100,000

Backed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Korean Version)
May be reprinted without restriction
1999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Washington, DC 20429

P-1400-003-99-K